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[적격](#)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트러스톤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"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트러스톤 적격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"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퇴직연금감독 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조항 신설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 다만,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2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의 비중을 2030년 1월 1일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,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3.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.</p>
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조항이동	<p>3. 제15조제2항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	<p>4. 제15조제2항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
<p>제16조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항 번 호 변경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제16조 제1호 내지 <u>제4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<u>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<p>-</p>	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